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정 및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신설
- 서울지방보훈청장 (안 제3조제3항제17호)
- 현행 기관(장) 명칭으로 조문 정비
(안 제3조제3항제2호·제3호·제15호)
-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『통합방위법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관련 규정중 지방보훈청장을 조례에 반영하고, 본문의 기관장 명칭과 용어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제3항제17호에는 모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청장 추가하는 것이며,
 - 안 제3조제3항제2호·3·15호의 기관(장) 명칭을 현행화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,
 - 그 밖에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한 것으로서,
- 검토결과,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어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에 지방보훈청장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서울지방보훈청장 추가(안 제3조)
- 나.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현행화(안 제3조)
- 다.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현행화(안 제9조, 안 제11조)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통합방위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 - 4)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7.4.13. ~ 5.4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”으로,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

제3조제3항제3호 중 “남부교육청”을 “남부교육지원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5호 중 “영등포지점장”을 “남서울 지역본부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서울지방보훈청장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협의회에 부의한”을 “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위협의회

제9조제2호 중 “민방위협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방위협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「통합방위법」 제9조제1항”을 “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) ② 의장은 <u>영등포구청장</u>으로 하고, 부의장은 <u>영등포구</u>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하고, 상임고문 1명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</p> <p>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</u></p> <p>3. 서울특별시 <u>남부교육청</u> 교육장</p> <p>4. ~ 14. (생략)</p> <p>15. 한국전력공사 <u>영등포지점장</u></p> <p>16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 <p>17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</p> <p>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1. <u>협의회에 부의한</u> 안건의 사전심의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② 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</u>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서울남부지방검찰청</u> 검사장</p> <p>3. ----- <u>남부교육지원청</u> --</p> <p>4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----- <u>남서울 지역본부장</u>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<u>서울지방보훈청장</u></p> <p>18. (현행 제17호와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</p> <p>① -----.</p> <p>1. <u>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</u>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협의회의 통합운영) 협의회는</p>	<p>제9조(협의회의 통합운영)-----</p>

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, 동도 이하 같다.

1. 「향토예비군설치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

2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

제11조(통합방위종합상황실) ① (생략)

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「통합방위법」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·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, 구 군·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 내에 두고, 동 군·경정보합동상황실은 동 실정에 맞게 동 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.

-----.

1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위협의회

2.-----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방위협의회

제11조(통합방위종합상황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10조 제1항-----

-----.